

기일	미지정
----	-----

주심	(카)
----	-----

사 건 2012추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피 고 서울특별시 의회
피고참가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본영수
2012. 3. .
(인)

준 비 서 면

2012. 3.

피고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이 안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김 진

대법원 특별 제2부(카) 귀중

법률사무소 **이안**

Tel 02·582·3461 Fax 02·582·3463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5-14 C&C빌딩 2층

1. 이 사건 제소의 경위

1)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소는, 참가인 교육감이 2011. 9. 14. 별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지방교육법'으로 약칭합니다)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되고, 그 권한을 대행하던 소외 이대영 부교육감·권한대행(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이 참가인 교육감의 의사에 반하여 재의결을 요구하였다가, 1심 선고 이후 석방되어 업무로 복귀한 참가인 교육감이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2) 소장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민 8만 5천명은 2011. 5. 20. 참가인 교육감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 청구를 하였고, 참가인 교육감은 조례안에 반대하지 않았으며(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0년 선거 당시 참가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도 같은 해 9. 30. 의견 첨부 없이 주민발의안을 그대로 피고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을 부의할 때에는 아무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 2011. 12. 19. 피고 의회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였을 때 원고 장관은 지방교육법 제28조 제1항 후문의 '재의결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같은 달 23. 해명자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하여 자

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밝히고(을나 제1호증의 1 보도자료), 바로 다음 날인 12. 24. 다시 한 번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 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바 없음”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을나 제1호증의 2 보도자료).

4) 그런데 권한대행(부교육감) 이대영은 원고 장관의 입장 표명과 달리 독자적으로, 참가인 교육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조례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이는 명백히 참가인 교육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발의하였던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5) 위와 같은 무리한 재의 요구가 있는 지 며칠 후인 2012. 1. 19. 참가인 교육감은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였고, 다음 날인 1. 20. 당초의 진정한 의사대로 위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피고 의회가 의결한 이 사건 조례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강행한 무리한 재의결 요구를 바로잡았던 것뿐입니다.

6) 그런데 당초 재의결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던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 복귀한 참가인 교육감이 권한대행의 무리한 재의결을 바로잡자 이를 문제 삼으며 철회 당일(2012. 1. 20.) 참가인 교육감에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고, 재의요구 사유들이 해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고,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야말로 '갑자기' 재의 요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갑 제3호증).

2.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한 제소요건

가. 원고 주장의 문제점

원고는 이 사건 제소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참가인의 철회에 대해 즉시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것이 동조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조에서 정한 주무부장관의 직접제소권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이 사건 원고의 제소는 동조 제7항의 제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직접 제소」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라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직접 제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i)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ii) 시·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의결 요구 지시’, iii) 시·도에서 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요합니다.

이 조항의 「재의결 요구 지시」와 「직접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의결 요구가 『집행기관』의 장(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제107조)과는 달리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장(제9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제172조)이며, 그 취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재의결 요구 지시’는 시·도가 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때 별도로 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은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감)이 재의결 요구를 하는 지를 불문하고 그 독자적인 권한에 의하여 재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직접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독자적 재의결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의결 요구 지시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의 독자성·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재의결 요구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사후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재의 요구가 없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결사항이 이송된 후 20일 동안(2011. 12. 20. ~ 2012. 1. 9.)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재의결 요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을나 제1호증의 1, 2). 따라서 재의결 요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2012. 1. 20.), 변경된 사정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는 '요청'을 하고, 이후 행해진 이 사건 제소는 지방자치법 제172조가 정한 직접 제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1. 20. 자 재의요구 '요청' 공문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감)이 재의결 요구를 하는지를 불문하고 그 독자적인 권한에 의하여 재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기간(2011. 12. 20. ~ 2012. 1. 9.) 동안 재의 요구 지시를 하지 않고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다름 아닌 원고 본인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 나타

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재의요구 요청권 박탈'을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 "제소기간 준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의결 요구 지시」라는 직접제소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의 문제를 단지 제소기간 준수의 문제로 축소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의 제소기간(7일)의 기산점이 참가인 교육감의 철회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하면서 재의요구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는 제소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소장 17, 18면).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이 '제소' 기간 자체에는 직무대행의 재의요구부터 철회시까지 기간을 산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의결 요구 지시' 기간이며, 원고는 애초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의결 요구 지시' 자체를 한 바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소장 16면) 교육감 직무대행이 재의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재의결 요구 지시를 하지 않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결 요구(제107조)와는 별도로 주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의결 요구를 지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 제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의결 요구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교육감 직무대행이 재의결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재의결 요구 지시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는 2012. 1. 20. 자 재의결 요구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소장 17면)”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i) 2012. 1. 20. 자 공문(갑 제3호증)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전부여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제7항이 정한 재의결 요구 지시(제7항은 ‘재의요구지시’라고 하여 단순한 ‘요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일 뿐 아니라, ii) 시기상으로 위 ‘요청’ 공문도 제1항이 정한 재의요구지시 기간(의결사항 이송 후 20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의요구지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권리 침해·의무 부과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주장의 부재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중 상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권리를 침해·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소장 4면), 조례 조항들을 나열한 다음 “이로 인하여 교사의 교육권, 설립·운영자의 사학 운영의 자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소장 5면)”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침해·제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제도로 보장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 제정은 일응 합법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논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의 주장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히 '교육권' 또는 '사학운영의 자유'를 전후사정 없이 '제한'하였다는 것만으로 조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권한 제한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조례가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그 공무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신장하는 대부분의 조례는 모두 그 반사적 효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책무를 부과하게 되는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조례가 무효라면 조례 제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소장 4면에서 인용한 조항 중 제18조 제4, 5항은 학생자치조직의 권리만 확인한 것이고, 제2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제4항은 교육감이 두어야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조례의 성격

이 사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조례가 가지는 성격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조례는 권리를 제한하기는커녕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증진하고 신장하는 것으로(제1조), 그 내용은 학교의 장, 학교의 설립·운영자, 교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장 등'으로 약칭합니다)에게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바(제4조 제2항), 누구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인권이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 무수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는 “학생에게 헌법이나 법률로 부여된 권리를 조례로서 확인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권리의 확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 실현·확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제한·금지되어야 할 일들이나 책무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조례의 나머지 조항들은 이러한 권리 실현의 책무와 제한·금지 등이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권리의 제한’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사건 조례 문언상 학교장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당초 교육관련법에 근거를 두거나 관습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해 온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지,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장 4면에서 예시되어 있는 '권한'의 제한을 자세히 보면 학교장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제한)을 해제(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조항	내용(소장 4면)	해제되는 제한
13조 4항	"휴대폰 소지·사용에 대한 통제 금지"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인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대폰 소지·사용권에 대한 제한 해제
16조 4항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심·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 해제

마. '의무의 부과'

원고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인권(권리)을 존중·보호·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책무'이고, 그 내용은 위에서 본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복지법 등에서 명시한 학교장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장 4면에 예시되어 있는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학생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무 또는 이미 교육관련법에서 정해진 학교장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조항	내용(소장 4면)	관련 권리 보장 책무
------	-----------	-------------

해당조항	내용(소장 4면)	관련 권리 보장 책무
9조 4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제16조 제3항[교육내용 미리공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자기결정권]
10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15조 2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15조 4항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6조의 2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16조 4항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종교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20조,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19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 [학칙개정시 학생의견 수렴의무]
20조 3항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21조 3항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교육기본법 제12조
23조 2항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식생활지도 등]
28조 2항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20조,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차별금지]
29조 6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

해당조항	내용(소장 4면)	관련 권리 보장 책무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조 3항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교육법 제18조의 4
48조 4항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9조 5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제7조[장학지도]

4. 상위 법령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에서 규율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제1항, 제3항), 자신의 소질·적성·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제8조 제1항),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제9조 제1항), 충분한 휴식시설·공간의 확보(제10조 제2항),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 불가(제13조 제4항), 예산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공개(제15조 제4항), 특정 종교의 교육 강요 금지 및 대체과목 마련(제16조 제3항, 제4항), 집회의 자유(제17조 제3항),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권리(제18조 제4항, 제5항),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제19조),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제20조 제1항)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모두 헌법이나 교육관계법, 그리고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규약에서 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확인하고 침해 금지를 명하면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관해 일률적·확일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즉 여전히 학교는 이러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제1항, 제3항)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 어디에도 학교 특성에 관계 없이 확일적·일률적 학칙을 두라고 강요한 바 없으며, 최소한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을 학칙으로 허용하자고 할 리는 없으니, 원고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사건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었던 '체벌'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처벌'을 의미하는 '체벌'은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2011. 3. 18.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도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신의 소질·적성·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제8조 제1항)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 어디에도 학교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일률적 학칙을 두라고 강요한 바 없으며, 이 조항은 교육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을 그대로 구현한 것일 뿐,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3)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제9조 제1항)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 어디에도 학교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일률적 학칙을 두라고 강요한 바 없으며,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은 그 사전적 의미 자체로부터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 내용은 교육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을 그대로 구현

한 것일 뿐,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4) 충분한 휴식시설·공간의 확보(제10조 제2항)

제10조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항 어디에도 학교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일률적 학칙을 두라고 강요한 바 없으며, 휴식을 누릴 권리는 학생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오히려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휴식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 도대체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5)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 불가(제13조 제4항)

제13조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아예 단서에서 학교 규칙으로 사용·소지의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최소한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6) 예산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공개(제15조 제4항)

제15조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 법에서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학교 구성원들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공개하는 것이므로, 학습자 본인에게 공개한다는 위 조례 조항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것입니다.

7) 특정 종교의 교육 강요 금지 및 대체과목 마련(제16조 제3항, 제4항)

제16조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가 종교 교육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모두 '강요' 또는 '차별', '비방', '종교 무관 과목에서의 반복적 언급' 등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금지하는 종교·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이상 각 학교는 얼마든지 자율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생이 강제로 배정되지 않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소장 11면), 아무리 학생이 강제로 배정되지 않는 종교계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강요'나 '차별', '불이익'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 집회의 자유(제17조 제3항)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선언·확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얼마든지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권리(제18조 제4항, 제5항)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이 조항 중 학생 자치조직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학생회 예산을 관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것에 관한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결사의 자유 및 자연권으로서의 자치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작컨대 원고가 문제 삼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제4항 제1호),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제2호),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제5항 제3호),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

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제5호) 등 자치조직의 범위를 넘어 학교 운영과 관련을 맺는 부분 정도일 것인데, ① 예산·공간·비품은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②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학생자치조직은 물론 학습자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참여권에 해당하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③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역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시대상(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공개되는 것)으로 교육 당사자인 학생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들이고,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전달은 교육 당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권리인데다가 그 의견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속된다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의 형성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학생회 담당 교사 추천 역시 자치조직의 담당 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 뿐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생 자치조직에 관해서는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가 있어 위와 같은 최소한의 자치 원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10) 학칙 제·개정 참여할 권리(제19조)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조리상 당연한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러한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보며 되는 것이지,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1)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제20조 제1항)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교육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그 학교의 운영 과정에 ‘참여’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학교운영 참여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가 정하는 학습자의 권리나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는커녕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체벌 금지 (조례 제6조)

원고는 2011. 3. 18.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칙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의 취지가 “간접체벌 권한을 학교장 및 교사에게 보장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 조례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장 및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① 위 조항 어디를 보아도 이것이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고, ② 오히려 위 조항은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이라고 하고 있어 엄연히 ‘징계’에 속하는 체벌을 보장한 취지로 보는 것은 이상하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개정에서 제31조 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훈육·훈계 등

* 원고는 소장에서 “도구와 신체 등을 통한 직접체벌”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이른 없이 범용된 바 없는 용어입니다.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조례 제6조가 위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두발 규제 금지 (조례 제12조 제2항)

원고는 두발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위 법령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인지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그저 “현란한 염색은 학생들의 집중력 방해로 인한 수업방해가 예상되고 염색이 피부 및 시력에 미치는 나쁜 영향으로 건강 내지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단정하지 못한 두발은 교육 및 인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일방적인 견해만 제시하면서 이것이 학칙제정권 및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제12조 제1항)”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본권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당연한 이 규정을 굳이 조례에 두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등갓길 강제 이발 등 지나친 두발규제가 가져온 역기능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가 열거하는 불분명한 ‘염려’와 ‘가능성’(게다가 ‘단정’, ‘현란’, ‘나쁜’ 등 지극히 주관적·자의적인 판단 영역입니다)만으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할 만큼 충분한 가치나 필요성,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도 없이 이렇게 추상적인 ‘염려’만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가. 소장 11면 이하 주장의 문제점

앞서 지적하였듯이 헌법상 제도로 보장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 제정은 일응 합법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제한하는지, 어떠한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논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소장 11면 이하의 주장은 모두 이러한 구체적인 논증은 물론, 이 사건 조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막연히 “교육의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정도의 이유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거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어야 마땅한 기본권에 대해 만연히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의 제소 사유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 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검토할 가치도 없는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만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만 간략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제한 (조례 제20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심의회·위원회나 센터와 읍부즈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이며(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교육법 제3조), 대부분의 조례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교육감의 심의·자문 기구로, 그 주요 업무는 교육감에 대한 권고와 의견 제시이고 교육감이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교육감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 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교육위원회)가 개입하거나 그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 “의무에 대한 규정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조례에 학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나 제172조 어디에서 조례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고, 굳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교육관련 법령이나 별개의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5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6항은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연히 그 책무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6. 결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는, 당초 재의요구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원고 장관이 재의 요구 철회를 계기로 갑자기 기간을 도과한 재의요구 '요청'을 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것도 구체적·객관적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비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마치 당장 학교 현장에서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과장 섞인 우려들이 이어졌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과 자유, 자치의 원리 등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거나 얼마든지 학교 사정에 맞게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앞서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나 광주에서는 큰 문제없이 학교 현장에서 인권규범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이를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던 일부 언론이나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도한 원고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부터 성숙한 인권 규범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증

을나 제1호증의 1, 2 각 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

2011. 12. 23.(금)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642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이진영 사무관

한겨레신문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압박' 보도 관련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보도일 : 2011. 12. 23(금)

보도내용

○ 교과부 서울학생인권 조례 재심의 압박

- 교과부 담당과장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입장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12.19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종교 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음.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 교과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음

을나
| 호증 |

해명자료 2011. 12. 24.(토)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642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이진영 사무관

서울신문 '교권 없는 학생인권조례 결국 손본다' 보도 관련
 중앙일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서울신문, 중앙일보
- 보도일 : 2011. 12. 24(토)
- 보도내용
 - 교과부,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서울신문)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함
 - 교과부 관계자는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는데다 법적 움직임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
 - 교과부, 조례안 재심의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키로 결정 (중앙일보)
 - 교과부 담당과장이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다" 말했다고 보도
- 교과부 입장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12.19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종교 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음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 교과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바 없음

을(나)
 제 1
 호
 중 2